和議實務　概要

1. 화의의 의의

화의절차에는 파산법상의 강제화의와 화의법상의 화의가 있으나, 통상 화의라 하면 화의법상의 화의를 의미함.

화의법상의 화의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화의법 제12조 제1항) 법원, 정리위원, 화의관재인의 보조 감독하에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예방하고, 채권자도 파산선고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채권에 관한 변제방법(화의조건)에 관하여 일종의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함.

2. 한국의 도산법제

가. (1) 기업이 경제적 파탄, 즉 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경우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도로는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 및 파산절차가 있는데, 이중 파산절차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자인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고 이를 채권자간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기업을 청산하는 절차인데 비하여,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는 채권자들의 양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호 및 법원의 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2) 기업의 재기를 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화의나 회사정리제도는 비슷하나, 화의는 파산에 직면하여 파산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인 기업재건제도인 반면, 회사정리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어도 위기에 처한 기업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기업재건제도라는 점에서 다름.

특히 회사정리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채권행사에 제

한을 받고 법률의 강력한 보호에 의하여 법원의 감독하에서 회사의 갱생이 도모되지만, 화의제도는 전적으로 채권자들의 양보를 통하여 채무의 지급유예가 이루어질 뿐 법률에 의한 보호가 별로 없고, 담보권자나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달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초기단계를 제외하면 법원이 관여하는 부분이 적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음.

- 또한, 화의에는 회사정리절차 및 파산절차와 달리 채권확정절차가 없기 때문에 채권표가 채무명의가 될 수 없음.
  따라서 화의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양보의 취소 또는 화의의 취소라는 불완전한 구제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음.
- 절차적용대상이 화의의 경우는 개인 및 법인 모두 가능하나 회사정리의 경우는 주식회사만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고, 그 신청도 화의의 경우는 채무자만, 회사정리의 경우는 채무자뿐아니라 채권자 및 주주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름.

(3) 1997년 들어 계속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도산이 빈발하였고 이러한 기업들이 대거 화의를 신청하였음.
그러자 기업 갱생을 위한 절차로서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중 어느 것이 보다 적절한가, 양 제도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화의절차가 원래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 논의가 분분하였고 그런 가운데 11월에는 IMF의 금융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이로써 이른바 IMF 체제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금융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중 하나로 부실기업 퇴출 제도가 합리적이고 신속하지 못하다는 점, 그 결과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아 금융기관 부실이 누적되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고 이에 정부가 IMF에 도산법제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러 급기야 1998. 2. 24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및 파산법의 개정작업이 서둘러 마무리되었음.

물론 그 얼마전부터도 통합도산법 제정 등 도산법제의 정비 문제가 논의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이 급히 법개정을 한 것은 IMF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강제된 측면이 있음.

이는 우리 나라의 금융관행 및 기업경영실태에 대한 깊은 연구나 기업경영실태를 규정짓는 금융관행의 개선작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서 추후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거쳐 재정비되어야 할 과제임.

최근에는 다시 IBRD의 요청 등에 의해 재개정 작업이 진행되어 2000. 1. 12.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음.

나. 실무 운영에 있어서는 위 개정 3법 이외에도 위 개정 3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사정리등규칙'(1998. 4. 7 제정, 대법원규칙 제1528호)과 회사정리제도와 관련하여 1992. 7. 29 제정되어 4차례에 걸쳐 개정된 송무예규인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 (송민 92-5)이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음.

3. 실무의 변천

가. 회사정리와 화의

(1) 1990년 전후하여 계속 경제가 침제되어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늘어 나면서 당시까지만 해도 회사정리제도가 기업주에게 특혜에 가까운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으므로 1991년 부터 회사정리 신청사건이 급증하였음(1989년 27건, 1990년 15건, 1991년 64건, 1992년 89건).

이에 대법원에서는 회사정리제도가 구 기업주를 위한 돌파구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국법원의 실무처리 방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1992년 7월 회사정리사건담당 재판장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회생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 및 갱생가능성 등 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이라는 송무예규를 제정하였음.

(2) 그러나, 주식 소유권 및 실질적 경영권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갱생시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실에 대한 책임자인 사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법원에 큰 부담을 주었음.

즉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이나 불가피성보다는 그 부정적인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었고, 회사정리절차운영상의 시행착오나 문제점은 회사, 채권자들, 법원이 공동으로 관여하여 발생한 결과인 것임에도 채권자들이나 여론은 그 모든 책임을 법원에 떠 넘기는 현상이 계속된 것임(특히 정리회사인 논노가 절차진행중 1995. 11. 다시 부도를 내고 사주가 해외로 도피해 버린 사실이 밝혀 지면서 법원의 감독 소홀을 묻는 여론이 비등하였음).

(3) 그러자, 대법원은 1996. 7. 27.자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대법원 예규를 개정하면서 정리회사의 경우 제3자인수방법을 통하여 회사의 소유주를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경영에 책임이 있는 구사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관행을 확립해 가고자 하였음.

그 영향으로 주식소각을 통해 경영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한 기업주들은 회사정리절차를 피하고 화의절차를 택하기 시작하였음. 그 동안 1962년의 화의법 제정 이후 1989년에 2건이 접수되었다가 모두 취하된 것 이외에는 1994년까지 한 건도 접수된 적이 없다가 1995년에 13건, 1996년에 9건 각 접수되는 데 그칠 정도로 그 이용이 미미하였는데, IMF를 전후하여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대거 화의를 신청하여 1997년에는 322

건, 1998년에는 728건으로 화의 접수가 급증하였음. 그 후 1999년에는 어느 정도 경제도 회복된 데에다가 화의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법개정이 이루어져 화의신청이 140건으로 감소하였음(회사정리건은 1997년에 132건, 1998년에 148건, 1999년에 37건이 접수됨).

그 가운데 대기업집단의 화의신청도 줄을 잇자 회사정리법과 화의법을 개정함으로써 화의제도 남용과 기업퇴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산절차에 관한 법제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 결국 IMF 자금지원과 함께 서둘러 관련 3법 및 회사정리사건처리 송무예규를 개정하고 회사정리등대법원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음.

이러한 와중에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와는 별도로 이른바 부도유예협약이라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는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절차와 마찬가지로 폭넓은 의미에서 도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의 갱생방안에 관한 제도로 볼 수 있으나, 그 실질적인 운영이 금융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많이 이용되었던 은행관리 유형의 하나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위 제도 역시 채권금융기관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강제성이 부족한 등의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음(아래의 협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폐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금융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기업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998. 6. 25 거의 모든 금융기관(205개사)이 참여하여 이른바 워크아웃(Workout)에 관한 협약('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이러한 제도 역시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절차와 마찬가지로 폭넓은 의미에서 도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으나, 그 실질적인 운영이 금융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많이 이용되었던 은행관리 유형의 하나로 볼 수 있음.

나. 파산

파산사건의 경우 1996년말 현재 전국 법원에 진행중인 사건이 15건에 불과할 정도로 그 동안 거의 이용되지 않았음. 이는 파산을 일종의 낙인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여 이를 기피하는 정서가 있어 우선 채무자 본인이 이를 원하지 않았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그 절차가 복잡하고 종결까지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임.

다만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최근 기업뿐아니라 소비자 개인의 경우에도 그 부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에 면책과 복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파산 신청이 많아 지는 등 파산신청이 늘어 나는 추세로 1997년에는 38건, 1998년에는 467건, 1999년에는 733건의 파산사건이 접수되었음.

4. 화의절차의 개시신청 및 보전처분

가. 신청

- 신청권자 : 채무자
- 대상 : 법인 및 개인
- 신청사유 : 1) 지급불능(지급정지시는 지급불능으로 추정)
  2) 법인의 채무초과(단,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중에는 예외)
  3) 위 1),2)의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4)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신청불가

-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신청서의 기재사항 : 업무내용, 영업시설, 주된 거래선, 종업원, 감독관청, 자산과 부채의 현황, 채권자 수와 채권액, 화의절차 개시원인의 발생경위, 화의조건, 화의조건의 이행방안

-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화의신청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이사들의 이력서, 정관, 주주명부, 채권자명부(화의채권과 비화의채권으로 분류), 채무자명부, 재무제표, 수정대차대조표(신청직전 가결산 한 것), 과거 수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신청직전 1년분의 자금운용실적표, 과거 수년간의 영업보고서, 화의인가후의 사업계획의 수지예상표, 변제계획서, 등기·등록의 대상인 재산의 등기부·등록원부 등본, 파산에 의한 청산시의 배당예상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관할 : 1) 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2) 외국에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한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3) 영업자가 아니거나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보통재판적 소재지
  4)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관할

- 신청의 취하
  화의개시결정시 까지는 언제라도 취하가 가능하나, 보전처분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제20조 9항).

나. 채무자 대표자 심문 및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 심문기일은 통상 접수후 5일 이내로 정하고 심문은 수명법관이 하는 것이 보통임(서울지방법원의 경우는 주심 관리위원도 배석).

- 대표자 심문후 7일(늦어도 10일)이내에 채권자협의회 구성(서울지방법원의 경우는 관리위원이 담당).

- 비용예납 결정은 통상 심문기일 지정과 동시에 하고 예납결정 정본은 심문기일에 교부하고 있음.

다. 보전처분 절차 및 내용

- 1998. 2. 24자 법개정 이전의 법원실무는 화의채무자가 변제금지가처분을 받아 채권자의 추심압력을 피하고 부도처분을 면한 다음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화의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화의절차개시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기 위하여 주거래은행 등 채권자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하여 총 화의채권액 중 2분의 1 이상의 화의채권자가 화의조건에 대한 찬성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전처분을 발령하였음.

- 그러나 위 법개정이후에는 화의개시여부의 결정시한을 3월 이내로 법정하고 그 남용방지를 위해 보전처분이후에는 그 개시신청 취하를 제한하는 등의 취지를 살려 위 주거래은행등 채권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지 않고 보전처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즉, 화의법원은 화의개시신청후 3-4일 이내에 신청인(또는 그 대표자)을 심문한 다음 법 18조 2호, 19조의 2에 해당하여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화의개시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주거래은행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함이 없이 보전처분을 하면서, 화의채무자에게 14일 이내에 총화의채권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화의채권자들로부터 화의절차진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 및 그 기한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령하고, 위 기한내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화의채무자가 성실하게 화의절차를 수행할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처분을 취소하고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하였음.

- 다만 법 19조의 2 제2호(대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동 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대표자심문 및 보전처분을 보류하였음. 의견조회 결과 채권자협의회가 화의를 원하고 관리위원회도 이에 동의하며 법원으로서도 화의신청 기각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대표자심문을 하고, 채권자협의회로부터 보전관재인을 추천받아 보전처분을 발령하고 채권자의 동의 등 그 이후의 절차는 통상의경우와 같이 진행하였음.

- 2000. 1. 12자 법개정에 의하여 다시 개시결정의 시기가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로 단축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법원의 실무도 변경되고 있음.

  : 비용예납 여부를 확인한 후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으면 화의개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전처분을 발령(서울지방법원의 경우 관리위원회에 보전처분에 관한 의견 조회).

  : 화의채권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현재는 보전처분이나 화의개시의 요건이 아님(위 과반수 동의는 정리위원이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갖추면 됨).

- 1998. 2. 24 법개정 전에는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보전관리인제도가 없었으나, 위 법개정시 보전관재인 제도 신설함.

- 그러나, 보전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채무자회사의 경영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짐(즉, 경영권의 변동이 없음). 단, 화의신청이후 개시결정시까지 채무자회사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부인권의 대상이 됨

- 보전처분의 주문례

(1) 당원의 2000거22호 화의개시사건의 인가결정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는 2000. 6. 1. 14:00(주 : 보전처분 결정일시)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및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인한 임금채무(퇴직금채무의 지급은 허가를 요함), 조세 기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는 채무,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는 예외로 한다.

나) 채무자는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채무자는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채무자는 기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각 경우에 있어서 미리 당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채무자는 이 결정 정본 송달일 이후 위 화의사건의 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금전수지의 상황을 매주마다 그 다음주 중에 당원 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별제권의 행사를 중지시키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본에서는 엄격한 요건(담보물의 가치가 충분할 것, 채무자의 성실성, 화의성립 가능성, 목적물의 불가결성)하에 제한적으로 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실무운용하고 있음.

단, 일반 강제집행의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제한적으로 내려 지고 있음.

- 보전처분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로 불복 가능. 단,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

- 보전처분결정과 동시에 법원은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등기를 촉탁함

- 보전처분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화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제20조 9항)
  : 일시적 경영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보전처분만을 받을 목적으로 화의신청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임.

라.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견 조회

- 2000. 1. 12자 법개정전에는 개시결정전에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화의개시 가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화의법에서는 화의개시와 동시에 정리위원을 선임하도록 바뀌었으므로 현재의 법원 실무도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면 바로 채권자협의회에 화의관재인 및 정리위원 후보에 관한 의견조회와 화의개시 여부에 관한 의견조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서울지방법원의 경우 관리위원회에도 화의관재인 및 정리위원 후보에 관한 의견 조회를 함).

5.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가. 위 1998. 2. 24자 법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제도를 신설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관리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

고 법원의 업무 처리 부담도 줄여 주려는 고려에서 신설된 것으로 위 3법 모두에 규정되어 있음. 또한 채권자 협의회는 주로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회사정리법과 화의법에 신설된 것임.

나. 관리위원회

(1) 설치 및 구성

- 관리위원회는 일단 서울지방법원에만 설치하고 그외의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에 촉탁하여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회사정리법 제93조의2, 회사정리등규칙 제2조).
-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변호사·공인회계사·금융기관 15년 이상 근무경력자·상장기업임원·법률학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 7년이상 근무경력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위촉하며(회사정리법 제93조의4 제3항),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관리위원의 신분은 보장되며 일정액의 보수가 지급됨(회사정리등규칙 제3조 제1항, 제6조, 제7조).

-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하고 화의법 및 파산법에서는 이를 원용하고 있음.

(2) 업무 및 권한

- 관리위원회는 법원이 화의조건에 대한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와 그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화의법 제19조의2 제2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신청기각에 대한 의견제시, 보전처분여

부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보전관재인 선임여부 및 후보자에 대한 의견제시, 정리위원 및 관재인후보에 대한 의견제시,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화의절차 관련 사무 등을 수행함(회사정리등규칙 제12조).

- 또한 법원은 관리위원에게 보전관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허가사무, 보전처분에 기한 재산(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제외)의 처분행위,영업을 위한 차재,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채용에 관한 허가사무 및 기타 법원이 정하는 허가사무를 위임할 수 있음(화의법 제11조의2 제4항, 회사정리등규칙 제23조).

다. 채권자협의회

(1) 구성

- 관리위원회 또는 법원(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화의개시 신청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함(회사정리등규칙 제29조 제1항). 다만 회사정리에 있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음(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1항).

- 채권자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채권총액 및 주요영업용자산에 대한 담보권 보유상황을 참작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회사정리절차 개시 또는 화의개시 신청 당시 채권자들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구성할 수 있음(회사정리등규칙 제29조 제2,3항).

- 대표채권자(동 규칙 제30조)

(2) 업무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이 화의조건에 대한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와 그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화의법 제19조의2 제2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신청기각에 대한 의견제시, 관재인 및 정리위원 후보에 대한 의견제시,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화의절차에 관한 의견제시 등의 사무를 담당함(화의법 제49조의 3 제1항, 회사정리등규칙 제35조).

6. 화의개시결정

가. 개시여부의 결정

- 2000. 1. 12자 법개정 전에는 보전처분시에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회사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법원은 정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화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없고 개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의개시결정을 하도록 하였으나, 위 법개정에 의하여 개시결정을 신청후 1월 이내에 하도록 단축하면서 정리위원도 개시결정시에 관재인과 함께 선임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제는 정리위원에 의한 조사 없이 신청서 및 첨부 회사서류, 대표자신문 결과, 채권자들의 의사, 관리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
- 개시결정시에는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재인과 정리위원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하여야 함

(법27조).

- 기각하여야 하거나 기각할 수 있는 경우 :

  1) 파산회피목적의 화의신청

  2) 화의신청인의 소재불명

  3)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경우

  4) 화의조건의 법률위반

  5) 화의조건이 화의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할 경우

  -- 이상, 필요적 기각 사유임(법 제18조)

  6) 화의비용 예납이 없는 경우

  7) 채권자집회에서 화의를 부결한 일이 있는 때

  8) 화의개시신청 또는 화의제공을 철회한 일이 있는 때

  9) 화의불인가결정 또는 화의취소결정을 한 일이 있는 때

  10) 주식회사의 경우 파탄의 원인이 이사등의 재산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나, 채무자의 자산·부채가 크거나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을 때

  : 대기업의 화의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임

- 2000. 1. 12자 법개정 이전에는 화의개시여부의 결정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할 경우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개정에 의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축되었고 위 연장조항도 삭제되었음 : 절차의 신속을 꾀하기 위한 규정임

- 담보제공명령 :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화의조건에 대한 인적·물적 담보(주식담보 포함)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음(법 제13조 5항). 이는 기업주 소유 주식 및 개인소유 재산을 회사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화의제도가 경영권보전을 위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임.

- 개시결정 주문례

1.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2. 변호사 000(사무소 소재지 *****)를 채무자의 화의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회계법인(사무소 소재지 *****)을 채무자의 정리위원으로 선임한다.
4. 화의채권 신고기간을 2000. 8. 21까지로 한다.
5. 화의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00. 10. 13. 14:00 ○○지방법원 제○호 법정으로 한다.

나. 개시결정의 효력

- 기존의 경영진이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나,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관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도 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할 수 없게 됨

- 화의채권자는 파산신청이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절차는 중지됨

다. 관재인의 선임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재인을 심문하여

야 한다(개정법 제37조의 2)

- 주로 변호사로 선임됨
- 권한
  1)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동의권
  2) 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권
  3) 금전수지청구권
  4) 채권자집회에의 출석 및 재산상황·화의조건의 적부에 대한 의견 진술권
  5) 신고된 채권에 대한 의결권부여여부에 관한 이의권

라. 정리위원의 선임

- 채무자의 사업 규모 및 내용과 자산 부채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관재인으로 하여금 정리위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음

-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장부 및 화의조건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한 후 화의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 정리위원은 통상 실무경험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신용평가기관를 선임.

- 채무자의 재산현황, 장부 등에 관한 조사
  이것은 화의의 재산적 기초에 대한 조사로서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음. 구체적으로 (1) 화의채무자가 화의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재산상황을 나타내는 명세서 및 채무자·채권자 명부등의

기재 내용의 정확성, (2) 유휴자산의 유무 및 환가 가능성, (3) 장부상 채무자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수 가능성, (4)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의 존부와 그 액수, (5) 사업의 수익성과 장래의 전망, (6) 화의 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과 사정, 그 제거의 가능성 등을 각종 장부와 관계인의 설명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함.

특히 사업의 기초가 되는 공장 건물 및 부지, 기계등 중요재산이 별제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때에는 화의가 성립되어도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사업의 기초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제권부 채권자가 별제권 행사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여야 함. 또 각종 상업장부 기재 내용의 적정성을 비롯한 업무현황도 조사하여야 함.

- 정리위원은 언제든지 관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36조 2항).

- 화의조건에 관한 조사

화의조건이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지 여부, 화의조건이 법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화의조건이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함.

- 화의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의 추가적 조사사항

화의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그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 등의 회사재산의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부실경영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함.

- 의견서 제출

정리위원은 위와 같은 조사를 마치고 조사의 경과와 결과를 종합하여 화의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 10부(원본,

주심판사용, 화의관재인용, 화의채무자용, 이해관계인 열람용)를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화의절차에서는 이 의견서가 화의의 성부를 사실상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정리위원은 자기의 책임으로 감정인을 선임할 수 있음.

- 정리위원의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개월 연장이 가능함(제39조의 2 제3항)

- 정리위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화의신청 당시 제시한 화의조건을 변경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음. 단 화의조건의 변경은 허가를 얻어야 가능함(법 제13조 3항). 이 경우 법원은 화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참작하여야 하며 화의개시의 결정을 한 후에는 정리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함(동 제4항).

7. 화의채권의 신고

- 화의채권자의 범위 : 화의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과 별제권의 실행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

- 일정한 범위의 조세채권과 임금채권 등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되고, 화의개시후의 이자·화의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위약금채권·화의절차참가비용·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화의채권보다 후순위의 채권으로 됨

- 화의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하면 이에 따

라 채권자표가 작성되나, 이 채권자표는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와 달리 확정판결의 효력이 없고 단순히 의결권행사의 기준이 될 뿐임

- 따라서 채권신고를 해태하더라도 실권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화의조건에 따라 그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음

- 관재인과 정리위원이 신고를 한 채권자의 의결권 유무와 의결권의 액에 관하여 조사를 함

8. 채권자집회와 화의인부결정

- 채무자는 화의조건을 채권자들에게 진술하는 방법으로 화의를 제공하고, 화의조건에 관하여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보증인 및 담보제공자가 그 취지를 진술하여야 함

- 관재인 및 정리위원은 화의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및 그 재산에 관한 경과와 현상을 보고하고, 화의조건이 화의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이행가능한지 여부, 화의에 의하지 않고 파산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화의조건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함

- 정리위원 및 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해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화의채권자·채무자·보증인도 신고채권에 대한 의결권부여여부에 관해 이의할 수 있는바,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이에 대해서는 불복 불가)

- 화의의 의결 : 출석채권자의 과반수 이상과 신고된 채권액의 3/4 이상의 동의

- 화의가 가결되면 법원은 화의채권자, 채무자, 정리위원 및 관재인의 의견을 들어 화의인가 결정을 하게 됨(종전에는 채권자 집회기일에서 즉시 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최근에는 집회기일 1-2주 후에 결정하고 있음)

- 화의가 부결될 경우 법원은 바로 화의폐지결정을 할 수 있으나, ① 출석채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화의에 동의하거나, ② 신고채권액의 3/4 이상이 화의에 동의하거나, ③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채권자의 과반수로서 그 채권액이 출석채권자의 총채권의 반액을 초과하는 자가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직권 또는 화의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속행할 수 있음(법 제53조, 파산법 제279조). 단 이 속행기일은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야 하며, 2개월 이내에 화의가 가결되지 않으면 화의를 폐지하여야 함(법 제63조 2항 2호)

- 화의인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가능 (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금전 또는 유가증권 공탁제도 신설)

- 화의불인가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나, 파산의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법 제9조 1항).

9. 화의인가결정의 효력

-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는 법원이나 관재인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됨

- 화의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실효됨

- 확정된 화의조건의 이행은 채무자에게 맡겨지나, 채무자는 반기별로 화의조건의 이행상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함.

10. 화의의 폐지

- 법원은 화의채무자가 회의조건을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전이라도 직권으로 또는 관재인,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함(법 63조 1항).

- 화의개시결정후 ① 화의의 가결전에 화의제공이 철회된 때, ② 채권자집회의 제1회 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화의가 가결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화의폐지결정을 하여야 하고, ① 채권자집회에서 화의가 부결된 때, ② 채무자에게 일정한 법령위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관재인이나 정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음

- 화의폐지결정이 있으면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함

11. 화의의 실효

가. 양보의 취소

화의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 진 경우 또는 채무자회사가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화의채권자는 화의조건에 따라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변제기를 유예해 준 양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양보를 취소한 채권자의 채권은 다른 화의채권의 변제가 완료된 이후에 변제받을 수 있게 됨(화의법 제66조, 파산법 제301조 내지 제303조).

나. 화의의 취소

채무자회사가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채권자의 과반수 이상 및 채권액의 3/4 이상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화의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화의취소결정을 할 수 있음(화의법 제68조, 파산법 제304조 제1,2항).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회사는 파산선고를 받게되나, 파산의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화의법 제9조)

12. 파산절차로의 이행 원활화 (법 제10조 2, 3항)

13. 맺음